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925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상정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43	김상훈	2025.12.26.	2026.3.10.
	2215679	이주영	2025.12.29.	2026.3.10.
	2216203	백종헌	2026. 1.21.	2026.3.10.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11.)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6. 3. 13.)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제작된 영상 광고가 SNS나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소비자 기만 광고를 규제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제14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제4호”를 “제13조제1항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
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
광고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
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② -----

----- 제13조제1항제5호 -----

-----.

③ ~ ⑦ (현행과 같음)